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수립·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증원하되,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국가비상사태 대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통일부의 행정직군 정원 1명(6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 군 1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변화하는 통일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일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1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1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는 한편,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자료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9일까지에서 2027년 4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271”을 “273”으로, 일반직 계 “267”을 “268”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3”으로 하고,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계획담당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를 신설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를 삭제, 전산사무관 “5”를 “4”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6”을 “15”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비상대비 담당) 1”를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비상대비 담당) 1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1”를 신설하고, 경찰공무원 계 1 다음에 “경감 1”를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71”을 “273”으로, 일반직 계 “267”을 “268”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을 “4”로 하고,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계획담당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를 신설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를 삭제, 전산사무관 “5”를 “4”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5”를 “14”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비상대비 담당) 1”를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비상대비 담당) 1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1”를 신설하고, 경찰공무원 계 1 다음에 “경감 1”를 신설한다.

별표 2 중 서기관 “2”를 “3”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를 삭제하며,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를 신설,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2의2 중 서기관 “2”를 “3”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를 삭제하며,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를 신설,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4 중 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을 “4”로,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4의2 중 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을 “4”로,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7의2 중 행정사무관 “3”을 “4”로, 행정주사 “5”를 “4”로 한다.

별표 7의3을 삭제한다.

통일부령 제12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 및 별표 7의 3”을 “별표 4의2”로, “1명 및 별표 7의3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를 “1명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5년 4월 19일”을 “2027년 4월 19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향 조정되는 <u>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 및 별표 7의3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u>은 2026년 12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u>별표 4의2의 행정주사 1명 및 별표 7의3의 행정주사 1명</u>으로 본다. ③ 삭 제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자료관리팀은 <u>2025년 4월 19일까지</u> 존속한다. ② · 제4조 (생 략)	----- <u>별표 4의2</u> ----- ----- ----- ----- ----- ----- ----- <u>1명으로</u>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7년 4월 19일</u>-----. ② · 제4조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71	273	+2
일반직 계	267	268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3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 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 설>	28	+28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 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	<삭 제>	-27

·	·	·	
전산사무관	<u>5</u>	<u>4</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6</u>	<u>15</u>	-1
·	·	·	
·	·	·	
<u>전 문 경 력 관</u>	<u><신 설></u>	<u>1</u>	+1
<u>나군(비상대비 담당)</u>			
<u>경찰공무원 계</u>	<u><신 설></u>	<u>1</u>	+1
<u>경감</u>	<u><신 설></u>	<u>1</u>	+1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71	273	+2
일반직 계	267	268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	4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 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 설>	28	+28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 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	<삭 제>	-27
.	.	.	

·	·	·	
전산사무관	<u>5</u>	<u>4</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5</u>	<u>14</u>	-1
·	·	·	
·	·	·	
<u>전 문 경 력 관</u>	<u><신 설></u>	<u>1</u>	+1
<u>나군(비상대비 담당)</u>			
<u>경찰공무원 계</u>	<u><신 설></u>	<u>1</u>	+1
<u>경감</u>	<u><신 설></u>	<u>1</u>	+1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남북관계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서기관	· · <u>2</u>	· · <u>3</u>	+1
· <u>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u>	· <u>1</u>	· <u><삭 제></u>	-1
· ·	· ·	· ·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u> <u>또는 방송통신서기</u>	<u><신 설></u>	<u>1</u>	+1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u>3</u>	<u>2</u>	-1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남북관계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서기관	· · <u>2</u>	· · <u>3</u>	+1
· <u>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u>	· <u>1</u>	· <u><삭 제></u>	-1
· ·	· ·	· ·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u> <u>또는 방송통신서기</u>	<u><신 설></u>	<u>1</u>	+1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u>3</u>	<u>2</u>	-1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 • <u>3</u> • • <u>2</u> •	• • <u>4</u> • • <u>1</u> •	+1 -1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 • <u>3</u> • • <u>2</u> •	• • <u>4</u> • • <u>1</u> •	+1 -1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3</u>	<u>4</u>	+1
행정주사	<u>5</u>	<u>4</u>	-1
·	·	·	
·	·	·	